

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[박윤옥 의원 대표발의]

검토보고서

2024. 10. 21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박윤옥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0월 1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 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목적,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계획수립 등(안 제4조~제6조)
- 고령친화도 평가 및 기초조사 등(안 제7조, 제8조)
-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(안 제9조, 제10조)
- 사회활동 참여,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(안 제11조, 제12조)
-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,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(안 제13조, 제14조)
- 건강증진, 영양·건강사업 지원(안 제15조, 제16조)
- 교육 및 홍보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, 제18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

다. 관련부서 : 노인복지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10. 15.(5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.

- 현재 우리시는 「노인복지법」과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좀 더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2024년 1월 23일 신설된「노인복지법」제4조의3 규정에도 고령친화도 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 제점은 없어 보임
- 그 밖에 사항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체계 등 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붙임1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- 제2조(기본이념)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 -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 -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·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 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 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5조의2(노후설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, 건강, 여가,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 ·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·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 려를 하고 도시·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 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경제와 산업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·산 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·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

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붙임2 예산수반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- 나. 재정 수반 요인
 - 제7조(고령친화도 평가 등) ~ 제18조(위탁)
 - 제26조(수당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첚부 사유

○ 의안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포괄적이고, 권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, 현재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한혜정